

제 1469 호  
1990. 1. 2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 공보관 유 천수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출판실  
전화 : 735-3337

# 시 보

## 차 례

◎ 조 례	
제2568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조례	3
제2569호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	4
◎ 교육규칙	
제 346 호 서울특별시 학생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5
◎ 훈 령	
제 691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교육상운영규정개정규정	5

(이면계속)

안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 고 시		
제11호	광견병 예방을 위한 방견단속 실시	6
제12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6
● 공 고		
제24호	관인재교부공고	7
제26호	'90상반기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시행계획	7
제32호	관인재교부공고	8
● 구 고 시		
제 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8
제 5 호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시행변경인가	9
● 구 공 고		
제 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9
제 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10
● 사업소고시		
제 4 호	하천점용허가	10
● 사 령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학교설치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 2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68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국민학교(동부)중 서울회경국민학교란 다음에 서울청남국민학교란을, (북부)중 서울충현국민학교란 다음에 서울상원국민학교란을, (강남)중 서울영희국민학교란 다음에 서울원명국민학교란을, (강서)중 서울화곡국민학교란 다음에 서울송화국민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남부)중 서울영남국민학교의 위치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23"을 "구로구 독산동 산 12-2"로 한다.

(동부)

번호	명 칭	위 치
58	서울광남국민학교	성동구 광장동 488

(북부)

번호	명 칭	위 치
65	서울상원국민학교	노원구 상계동 839-5

(강남)

번호	명 칭	위 치
42	서울원명국민학교	서초구 서초동 산 192-3

(강서)

번호	명 칭	위 치
40	서울송화국민학교	강서구 방화동 240-6

(별표2)의 중학교(남부)중 한강여자중학교란 다음에 문정중학교란과 구일중학교란을, (북부)중 상경중학교란 다음에 증평중학교란을, (강남)중 인남중학교란 다음에 신동중학교란과 대명중학교란을, (강동)중 오류여자중학교란 다음에 한산중학교란과 문정중학교란을, (강서)중 강신중학교란 다음에 양천중학교란과 양서중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중부)중 "용산여자중학교"를 "용강중학교"로 하며, 한강중학교의 위치 "용산구 이촌동 300-302"를 "용산구 서빙고동 4-1"로 한다.

(남부)

번호	명 칭	위 치
27	문정중학교	구로구 독산동 산 10-6
28	구일중학교	구로구 구로동 685-184

(북부)

번호	명 칭	위 치
27	증평중학교	노원구 하계동 292-5

(강남)

번호	명 칭	위 치
25	신동중학교	서초구 잠원동 351-11
26	귀명중학교	강남구 대치동 952

(강동)

번호	명 칭	위 치
22	한산중학교	강동구 둔촌동 161-1
23	문정중학교	송파구 문정동 12-1

(강서)

번호	명 칭	위 치
17	양천중학교	양천구 신월동 948
18	양서중학교	양천구 신월동 169-4

(별표3)의 고등학교중 잠신고등학교란 다음에 청담고등학교란, 구일고등학교란, 영신고등학교란, 양재고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중경고등학교의 위치 "용산구 서빙고동 4-1"을 "용산구 이촌동 300-302"로 한다.

번호	명칭	위치
63	청담고등학교	강남구 청담동 33-2
64	구일고등학교	구로구 구로동 685-194
65	영신고등학교	영등포구 신길동 4656
66	양재고등학교	강남구 도곡동 산 6-14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사용료경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2569호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사용료경수조례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사용료경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체육관사용료중 3. 입장료, 5. 상업사용료, 6. 부속시설사용료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90. 1. 2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김 상 준 ㉠

3. 입장료 (단위: 원)

구분	단위	금액	비고
· 일반	1인 1회	150	
· 13세 이하의 아동 및 학생	1인 1회	100	학생은 고등학교 이하에 한함.

5. 상업사용료 (단위: 원)

구분	금 액	비 고
· 영화촬영 · 에드벌론등 부양광고물  · 프로그램, 선전책자판매 · 선전(광고)를 위한 부착제시, 전열, 전람 부착광고물: 1미터×3미터이내(1점기준)	· 주간: 80,000원, 야간: 90,000원 · 1개당(1일) 6,000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 1부당가격 × 판매부수 × 2할 · 1년간: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 · 고등학교 이하 대회 (4일이내): 70,000 · 대학, 실업경기대회 및 이에 준하는 행사 (4일이내): 80,000	· 1일초과: 사용료의 1/10 · "

구 분	금 액	비 고
· 기타 물품판매대여	· 아시아선수권대회 및 이에 준하는 행사 (4일이내) : 100,000 · 세계선수권대회 및 이에 준하는 행사 (4일이내) : 150,000 (매출금액-원가)×2할	· 1일초과 : 사용료의 1/10

6.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금 액
· 확성기 (1일 1개)	5,000
· 전기조명	실제사용한 전기, 유류의 고시가격 또는 관허요금
· 온향설비	기본료 (10,000) + 실제사용한 전기 고시가격 또는 관허요금
· 냉·난방	기본료 (30,000) + 실제 사용한 전기, 유류 고시 가격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된 사용료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 육 규 칙**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1. 2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①

◎교육규칙제346호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관장은 검인된 관람권의 간표와 책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종료후 전용자 입회하여 폐기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운영규칙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1. 20  
 서울특별시장 고건환

◎서울특별시훈령제691호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운영규칙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중 교육결과 순위로 3인에게 수여한다."를

“최근별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전문교육 과정으로서 교육기간이 2주이상 이고 평가가 실시되는 과정을 이수한자 중 성적우수자와 우수분임에게 수여한다.” 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6항중 “시상시기 및 시상금 등”을 “시상시기 및 시상방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1. 교육인원이 50명이하인 교육과정은 30만원
2. 교육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은 50만원
3. 간부양성과정등 3개월이상인 장기과정은 100만원

제4조 제1항중 “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원”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시상금의 집행”을 “시상의집행”으로 “시상금의 지급총액”을 “지급총액”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중 “시상금지급금액”을 “시상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1호

광견병 예방을 위한 방견단속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광견병 예방주사를 마치지 아니한 개가 육의에서 배회하는것을 단속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1

서울특별시장

1. 목 적 : 광견병 만연의 미연방지
2. 대 상 : 육의에서 배회하는 개
3. 지 역 : 서울특별시 전역
4. 기 간 : '90. 1. 16 ~ '90. 12. 31
5. 방 법 : 포박하여 일정한 장소에 억류
6. 기타사항
  - 가) 억류된 개는 구청별로 억류상방을 공고합니다.
  - 나) 억류된 개를 되돌려 받고자하는 축주는 억류공고후 10일 이내에 광견병예방주사필증을 지참 인수하여야 합니다.
  - 다) 억류기간중 반환요구가 없는 개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의하여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라) 광견병 예방주사를 미필한 방견 축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고발됩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12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문화재보호법 제12조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함

1990. 1.

서울특별시장

- 인 정 해 제 내 역 -							
종 별 및 지정번호	명 칭	보 유 자 인 정 해 제					
		성 명	성 별	생년 월일	주 소	해제사유	해제년월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호	송파다리 밭 기	이 충 선 (李忠善)	남	1901 9.15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패밀리아파트 114동 801호	'89.12.21 사 당 (노 환)	1989 12.21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24호

관 인 재 교 부 공 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89. 12. 27 서울특별시조례 제2537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장 설치조례('89. 12. 27 서울특별시조례 제2540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앙하수처리장장"의 관인을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8조와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함을 등규정 제9조 및 등규칙 제4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0. 1. 16

서울특별시장

1.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1990. 1. 20
2. 관인 재교부 내역

	신 규	폐 기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 중앙하수처리장장인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중앙하수처리장장인

◎서울특별시공고제26호

1990년도상반기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시행계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1. 20

서울특별시장

1. 명예퇴직대상
  - 2급이하 일반직, 지방소방정감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 신청개시일 현재 2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 이내에 자진 퇴직하는자
  - 5급이상('30. 1. 1-'38.12.31 사이 출생자)
  - 6급이하('33. 1. 1-'41.12.31 사이 출생자)
2. 명예퇴직신청
  - 가. 신청기간 : '90. 3. 1-'90. 3. 5
  - 나. 신청절차 : 명예퇴직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후 시장에게 제출할 것.
3. 명예퇴직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서울특별시장은 명예퇴직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4. 명예퇴직대상자의 사직원제출
 

명예퇴직의 결정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그

통지됨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울특별시 시장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명예퇴직자 우대

- 수당지급: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
- 가. 1년이상 5년이내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 정년잔여 월수
- 나. 5년초과 10년이내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  $\frac{\text{정년잔여월수} - 60}{2}$
- 특별승진 및 표창: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1항4호(단, 승진임용제한을 받는자 제외)

6.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청외 배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서울특별시공고제32호**



관 인 재 교 부 공 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의 관인을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8조와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함을 동규정 제9조 및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0. 1. 19  
서울특별시장

1.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1990년 1월 25일

2. 관인재교부 내역

인영	신	규	명	기
				
공인명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인 (지소민원사무관용)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인 (지소민원사무관용)		

**구 고 시**

**◎동대문구고시제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536호('89. 12. 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된 동대문구 장안동 186의34-186의 9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1. 18  
동대문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복원(㎡)	연장(㎡)	시	점	종	점	비고
신설	소로	2	8	97	장안동	186-34	장안동	186-9	

나. 고시도면: 생략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관악구고시제5호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시행변경인가

1. 건설부고시 제419호('83. 12. 23) 건고64 ('86. 2. 15) 건고132 ('86. 3. 13) 공원조성 기본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698 ('83. 12. 26), 서고 152 ('86. 3. 13) 서고 927 ('89. 8. 7)호로 공람 공고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449 ('89. 10. 17)호로 도시계획 사업 시행 인가된 관악산 자연공원(공원시설)확충 공사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을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6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 하고 이를 도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 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1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관악구 신림동 210-1의 9필지

나. 사업규모: 당초 주차장 확장: 1,971㎡  
야유회장: 1,108㎡

변경 주차장 확장: 1,971㎡  
야유회장 및 광장: 6,618㎡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 사업 (공원시설 확충공사)

라. 사업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공: 시행인가일로부터 30일

- 준공: 당초 '90. 6. 30

변경 '90. 10. 30

마. 토지조서: 별첨(변경)

바.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성명: 별첨  
사. 사업시행자: 관악구청장

구 공 고

●성북구공고제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71호('72. 11. 18)로 지적고시된 석관시장주변 도로 포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코저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통지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공람장소: 성북구청(토목과, 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990. 1. 18

성 북 구 청 장 인

1) 사업시행지: 석관1동 270-1 ~ 석관1동 299-3간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석관시장주변 도로포장공사

3) 사업의규모: 폭 6-8m, 연장=100m

4) 사업의시행자: 성북구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90. 1-'9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8) 기타사항: 의견 및 기타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공고제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493호('66. 6. 21)로 시설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2948호('66. 12. 7)로 지적승인된 신사동 178의 9-161간 도로 개설공사 구간인 신사동 185의 4-108의 4간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본제도는 은평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의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가통합니다.

1990. 1. 17

은 평 구 청 장

공 략 개 요

- 가. 공사명 : 신사동 178의 9-161간 도로개설공사
- 나. 사업의시행지 : 은평구 신사동 185의

4-180의 4간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라. 사업의 규모 : B=15m, L=50m

마. 사업의 시행자 : 은평구청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90. 1 - '91. 2. 28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주소 : 별첨 (생략)

사업소고시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4호

하 천 점 용 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1990. 1. 19

한 강 공 원 관 리 사 업 소 장

허가 년월일	위 치	지목	점용 면적	점 용 목 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자	
						주 소	성 명
'90. 1. 1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지구 앞 한강	한강	40㎡	지하철 5호선 기본설계용 시추조사	'90. 1. 19 - 1. 3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주) 대우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주영욱

사 령

◎1990년 1월 19일자

5급 공무원 면직

성 명	발령사함	현 부 사 직	급
송영선	원예 외하여 그 확충 연합	통계 담당관	지방행정사무원

서울특별시